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7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임이자·김종양·정희용

박충권 • 유용원 • 김형동

최수진 · 김소희 · 이철규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한 지자체의 경우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수도요금 현실화 율은 낮아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유수율 향상, 수도요금 합리화 등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 계 개선 노력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4항 신설).

- 나.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21호·제2 5호 신설).
- 다.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 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 해야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 마. 상수도조합도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바.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 보조 지원 근 거를 신설함(안 제75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외한다)는"을 "제외한다)·상수도조합은"으로,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하며,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제3조제8호 및 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수도사업 통합"이란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제6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상수도조합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사업자"를 "사업자, 상수도조합"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또한 같다.

- 1.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환경부장관이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의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합계획을 수립한다.
- ③ 수도사업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자체별 수도서비스 현황
- 2. 지자체별 수도사업 재정여건 및 경영현황
- 3. 수도사업 통합 운영방식
- 4. 재무개선 및 조직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 및 효과
- 5. 수도서비스 개선방안 및 효과
- 6. 그 밖에 지속가능한 수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을 "광역상수도 및"으로,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로 한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2조(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책무) ①・② (생 략)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3-----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 .---- 제외한 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 다) · 상수도조합은 -----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 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 한다.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 • 재정 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 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 사를 말한다)는 관할 구역의 수 도사업자에게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 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 ④ ~ ⑥ (생 략) 항까지와 같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 8. ----- 지방자치단체 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 또는 상수도조합이 ------

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 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 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 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 20. (생 략) <신 설>

21. ~ 23. (생략)

<u>.</u>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10. ~ 20. (현행과 같음)
21. "수도사업 통합"이란 지속
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
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
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
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
업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
는 것을 말한다.
22. ~ 24. (현행 제21호부터 제

<신 설>

24. ~ 33. (생략)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 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
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기 위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u>26</u> . ∼ <u>35</u> . (현행 제24호부터 제
33호까지와 같음)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
다만, 제3조제21호
에 따른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
<u>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u> 하는 가가 스디저비게하우 통하
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

23호까지와 같음)

- ② 삭 제
- ③ ~ ⑤ (생 략)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그수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⑦ ~ ⑨ (생 략)
-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 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④ (생 략) <신 설>

③ ~ ⑤ (현행과 같음)
6
트버기가 되어지기 트버키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u>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u>
군수·상수도조합이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사업자, 상수도조합
<u>四日四,6十二二日</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수도사업 통합계획의

하여 수립할 수 있다.

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 사업 통합계획(이하 "통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 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 에는 또한 같다.

- 1.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 2.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환경부장관이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의 대 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 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

가 통합계획을 수립한다. ③ 수도사업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지자체별 수도서비스 현황 2. 지자체별 수도사업 재정여건 및 경영현황 3. 수도사업 통합 운영방식 4. 재무개선 및 조직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 및 효과 5. 수도서비스 개선방안 및 효 과 6. 그 밖에 지속가능한 수도경 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 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 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 2. 삭 제
-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u>지방자치단체가</u> 설 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 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4. • 5. (생략)

② ~ ⑤ (생 략)

제75조(국고 보조 등) (생 략)

<신 설>

· 1. <u>광역상수도 및</u>
제외
한다):
3 지방자치단체 또는
<u> 상수도조합이</u>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국고 보조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는 수도사업 통합을 추
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
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